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4호)

심사보고서

1997. 11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 11. 19 고성군수
- 나. 회부일자 : 1997. 11. 26
- 다. 상정·의결일자 : 1997. 11. 26 상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현행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잡고 이원화 되어 있는 관련법규를 일원화 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위임조례중 권한 위임사항 재정비(별표)
- 신설 : 농지전용 신고(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건축물대장 기재, 말소, 변경, 정정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규칙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이원화된 위임조례 일원화(안 제2조제2항)
-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내용을 고성군사무위임조례에 명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권한위임 사항을 재정비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내용을 고성군사무위임조례에 일원화 함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편익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7. 11.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